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-28호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5일

국가기술표준원장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 도입에 따라 세부품목, 모델구분 세부기준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##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 11. 조명기기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류	품목	세부품목
11. 조명기기	다.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	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 휴대전등 ③ 투광조명 등기구 ④ 할로젠등기구 ⑤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

[별표 10] 11. 조명기기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품분류	품목명	모델구분	세부기준
11. 조명기기	다. 가목을 제외한 그 밖의 조명기구	(현행과동일)	(1) ~ (3) (현행과 동일)
	① 체인형 조명기구	(현행과동일)	(1) ~ (6) (현행과 동일)
	② 충전식 휴대전등 ③ 투광조명 등기구	(현행과동일)	(1) ~ (3) (현행과 동일)

	④ 할로겐등기구	(현행과동일)	(1) ~ (4) (현행과 동일)
		(현행과동일)	(1) (현행과 동일)
		(현행과동일)	(1) (현행과 동일)
	⑤ 등기구 전원공급용 <u>트랙시스템</u>	<u>정격전압</u>	(1) <u>150V 이하인 것</u>
			(2) <u>150V 초과인 것</u>
			(3) <u>기타인 것 (정격전압을 기재할 것)</u>
<u>정격전류</u>	(1) <u>3A 이하인 것</u>		
	(2) <u>3A 초과 6A 이하인 것</u>		
	(3) <u>6A 초과 12A 이하인 것</u>		
	(4) <u>12A 초과 16A 이하인 것</u>		
	(5) <u>16A 초과하는 것</u>		
<u>방수보호등급</u>	<u>비고: 안전에 영향을 주지않는 IP등급의 변경은 별도 기본모델이 아닌 변경인증으로 간주한다</u>		

[별표 20] 11. 조명기기 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품분류	품목명	세부내용	
		세부품목	부품리스트
11. 조명기기	다.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	(현행과 동일)	(현행과 동일)
		(현행과 동일)	(현행과 동일)
		⑤ 동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	<u>전원전선</u> <u>플러그</u> <u>상호연결 커플러(인렛)</u> <u>상호연결 커플러(커넥터)</u> <u>전파방해억제용 전원필터(인렛)</u> <u>코드세트</u> <u>콘센트</u> <u>스위치</u> <u>X-커패시터</u> <u>Y-커패시터</u> <u>어댑터</u> <u>퓨즈</u> <u>퓨즈홀더</u> <u>Fusible Resistor</u> <u>기기보호용차단기</u> <u>온도과승방지장치</u> <u>온도퓨즈</u> <u>온도조절기</u> <u>충전부 절연재질</u> <u>외함(플라스틱, 금속 등)</u> <u>단자, 접지 재질</u> <u>접점 재질</u> <u>PCB</u> <u>Varistor</u>

제품분류	품목명	세부내용	
		세부품목	부품리스트
			<a href="#">라인필터</a> <a href="#">릴레이</a> <a href="#">Triac</a> <a href="#">변압기</a> <a href="#">Opto Coupler</a> <a href="#">조명기구용 컨버터</a>

[별표 25] 제2호의 조명기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분류	품목	세부품목	안전기준번호	안전기준명
조명기기	기타 조명기구	<a href="#">등기구</a> <a href="#">전원공급용</a> <a href="#">트랙 시스템</a>	<a href="#">KC 60570</a>	<a href="#">등기구 전원공급용</a> <a href="#">트랙 시스템</a>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